

논문 2019-2-3 <http://dx.doi.org/10.29056/jsav.2019.12.03>

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판단에 대한 비판

정진근*†

Comment on the Copyrightability of Font-files as Computer Program

Jin-Keun Jeong*†

요 약

글자체파일의 무단 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법원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인가? 이러한 인식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의 인식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INI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며, 단지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특히, CAD 파일들 역시 외형상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할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자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Use without permission of font files is a social problem. In the meantime, our court recognized font files as computer programs. Is the font file a computer program? This recognition arises from the in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computer programs and data. Expert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does not recognize font files as computer programs. In this regard, there was a case in 2014 that INI files were not computer programs, but only data files. So,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n 2001 only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computer programs and data.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eeds to be changed. In addition, a new lega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font files.

한글키워드 : 글자체, 글자체파일, 컴퓨터프로그램, INI파일, 비트맵, 벡터그래픽

keywords : typography, font, font file, computer program, INI file, bitmap, vector graphic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1996년 글자체 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반려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글자체가 갖는 실용적 기능 및 문화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글자체의 보호를 부정하였고, 이 판결은 지금까지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정진근(email: jkjeong@kangwon.ac.kr)

접수일자: 2019.11.04. 심사완료: 2019.12.09.

게재확정: 2019.12.20.

글자체의 보호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1]. 이에 더하여 이 판결은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정립하는 중요한 판결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글자체에 대한 국내의 보호는 일체 부정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글자체를 창작한 자가 아닌 제3자가 글자체파일[2]을 CD 등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우리 글자체 창작산업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2001년 이후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3]. 이 판결 이후 민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 등에서 대법원은 동일한 논리로 글자체 파일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판결은 1)글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데 반해 글자체 파일은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분법적인 보호방법을 제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고, 2)그림파일인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판단함으로써, 음악/미술/영상/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발전에 따라 지시명령과 유사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파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3)이 판결 이후 INI파일 역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새로운 논쟁의 원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4] 논하지 않고,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기로 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별한 INI사건의 판례를 중심으로 논한다.

2. 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선행 문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연구과제보고서와 그 후속 논문이 있다[5].

이 연구를 보면 글자체파일이 SW인지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감정인, 그리고 SW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는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감정인들 중 78.95%가 글자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SW감정인 중 단지 4명만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대다수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응답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선, SW기업 담당자들과 SW감정인들은 SW 저작권에 대해 이해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설문이 실시된 2013년은 우리 대법원에서 글자체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기 시작한 2001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이며, 글자체파일 저작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며 언론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SW감정인과 SW기업 담당자들은 글자체파일 보호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가 집단은 대법원 판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SW 저작권 전문가 집단으로부터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글자체파일의 본질에서 본 판례의 비판[6]

3.1 글자체파일은 왜 지시명령을 포함하게 되었는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이 때 창작물의 요건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이 부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되도록 하는 요건이다[7]. 이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이라는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자체파일의 지시·명령은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의 지시·명령인가?

이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데,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단순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 외에도 영상, 음성, 동영상 등 오감을 자극하는 데이터들이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2진수로 이루어진 값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그림을 컴퓨터에 표현하는 기존의 방식은 비트맵(BITMAP)방식이었다. 비트맵방식은 화면을 이루는 픽셀(pixel)들 하나하나에 특정한 색깔 값을 지정하고 저장하는 방식이다. 비트맵방식은 색을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식이기는 하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장공간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픽셀에 흑백이라는 2가지 색을 표현하는 데에는 1bit가 필요

할 뿐이지만,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256개의 색에는 8bit, 65,000개 정도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6bit가 필요하게 된다. $2^8=256$ 이고, $2^{16}=65,536$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장공간은 하나의 픽셀에 필요한 것이다.

만약 한 화면이 1,000×1,000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1초에 60회의 트루컬러 화질의 화면이 연속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1시간 분량의 영상 저작물을 비트맵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2Mbyte(16Mbit)×60회×1시간×3,600초=432,000Mbyte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432Gbyte를 의미한다. 현재의 전송기술, 그리고 컴퓨터저장공간으로는 1시간 분량의 영화를 보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벡터그래픽(vector graphic)방식이 개발되었다. 벡터그래픽 방식은 영상이나 음성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압축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특정위치에 원이 있고, 그 원의 내부는 붉은색, 그 외부는 노란색을 표현한다면, $(x-a)^2 + (y-b)^2 = r^2$;이라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원을 표현하고, inner_circle=redcolor;라는 스크립트로 원의 내부를 붉은 색으로 표현하고, 이와 동시에 out_circle=yellowcolor;라는 스크립트로 원의 외부를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충분하게 된다.

즉, 저장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널리 쓰이는 ‘JPG’, ‘GIF’과 같은 파일 형식들은 모두 벡터그래픽 방식을 이용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들은 모두 지시명령처럼 보이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기술변화를 도외시한 채, 벡터그래픽방식으로 글자체도안을 표현한 것을 ‘윤곽선 방식’이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스크립트로 표현되는 것을 컴퓨터프로그램의 지시명령이라고 판단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어떠한 그래픽 파일도 지시명령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디자인은 주로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디자인들은 모두 외견상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디자인의 결과물들 역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자체파일에 비해 더욱 복잡한 3차원 모델을 표현하는 3D 프린터 출력용 파일포맷인 STL파일 역시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꼭짓점 좌표와 벡터그래픽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들 파일은 데이터로 평가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발견된다[8]. 미국 학자들 역시 미국 법원이 새로운 기술발전예 따른 디지털방식의 제조용 파일들(digital manufacturing files)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는 태도는 실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9].

3.2 지시명령과 데이터의 구별 - INI파일 관련 판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에도 외견상 지시명령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데이터와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별하는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INI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에 관한 판례이다[10]. INI파일은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초기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초기화 파일(initialization file)이라는 의미를 확장자로 갖는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외견 상 지시명령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
· ER_READER.ini
  · Set Values for RFID Rearder
  · for SIO
```

```
SIO_PORT_NAME = COM4 (COMx : Window
                  /dev/ttySx : Linux)
REARDEER_TYPE = ER200 (ER100/ER200)
SIO_BAUD_RATE = 115200 (38400 / 115200)
SIO_TIME_OUT = 100 ms (>100ms for LINUX)
SIO_RX_RETRY = 20 TIMES (Rx Retry Count)
SIO_SLEEP_TIME = 20ms (Sleep Time After RX)
· FOR API
FUNC_RETRY_CNT = 5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파일을 제공한 자는 이 사건 파일이 지시명령인 다른 프로그램 호출명령, 작업구분명령, 특정변수에 설정한 값을 배정하는 배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크립트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어 다른 프로그램(SmartID.exe, RFID_API.DLL, ER200_Reader.DLL)에 의하여 ‘표현’문장 단위로 구문 해석되어 간접적으로 실행되며, 그 실행 결과 외부 프로그램과 기능의 호출, 통신포트의 변경, 피고 단말기 종류의 지정, 재시도회수의 변경 등의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에 기술된 외견 상 지시명령으로 보이는 것들이 데이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위의 데이터들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이 이 사건 파일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그렇다면, 문자로 표현되어 컴퓨터에서 사용됨으로써 특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파일은 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1].

첫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지시명령은 정보처리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일정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파일과 같은 전자

파일이 기록매체에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정보처리장치가 이를 읽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된 것이라도 정보처리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일정한 처리를 하게 하지 않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지시명령이란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지시명령이다.

둘째, 컴퓨터프로그램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 그 기호나 문자에 의미를 부여하여 처리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읽어와 정해진 처리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파일 내에 기호나 문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은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용된다.

셋째, 파일에 기술된 데이터 내용의 차이에 따라 처리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데이터가 정보처리장치에 지시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파일은 SmartID프로그램과 같은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내용이 순차적으로 읽혀져 특정 구문형식에 따라 해석되는 것일 뿐 명령어의 내용에 따라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다른 구문으로 이동하는 등의 기능이 없다. 즉,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읽혀져 정보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요지를 다시 정리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지시명령은 정보처리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지시명령의 대상은 정보처리장치이고, 지시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다른 구문으로 이동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해법에 따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 데이터는 -외견 상 지시명령으로 보이는 문자나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순차적으로

읽히는 정도를 넘어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다른 구문으로 이동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한편 정보처리장치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문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구별이 여전히 불분명하기는 하나-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구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시명령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판례의 설명은 글자체파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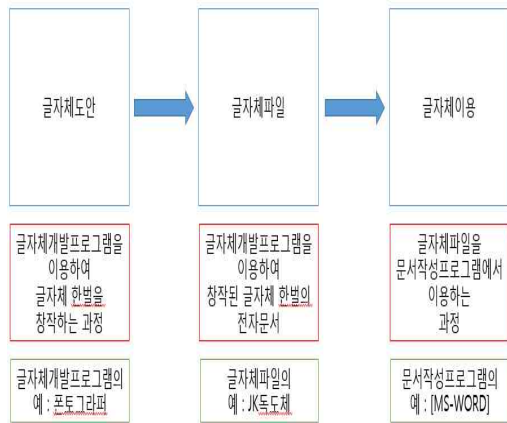
3.3 대법원 판례의 오류원인에 대한 분석

대법원은 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 사건 글자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글자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2].

그러나 위 대법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었다.

첫째, 글자체파일의 제작 및 이용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글자체도안과 그 결과물인 글자체파일, 그리고 글자체이용 간의 관계는 위 그림과 같다. 위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글자체파일은 글자체개발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한 결과물이고, 2)문서작성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데이터파일의 관계를 갖는다.

둘째, 글자체파일의 내용은 곧바로 정보처리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프로그램인 MS-WORD와 같은 문서작성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용되며, 글자체파일의 내용은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순차적으로 또는 하나의 데이터로 읽혀질 뿐이지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다른 구문으로 이동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13].

셋째, 글자체라는 특정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서작성프로그램이 글자체파일을 데이터로 이용하여 나타내는 결과일 뿐이지, 글자체파일이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지시명령함

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

넷째, 법원은 글자체파일이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글자체파일에는 윤곽선의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에 관한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절과 변경은 MS-WORD와 같은 문서작성프로그램의 기능일 뿐이다. 즉, 글자체는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글자체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장평을 조절하거나 이탤릭체로 변경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하는 등의 기능은 문서작성프로그램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법원은 글자체파일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식이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1)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언어)로 작성되었고, 2)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내용은 지시명령이라는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1)INI파일 역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2)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것은 벡터그래픽방식에서 널리 이용되는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는 대법원 관례는 데이터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며,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표현기술을 오해한 것으로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으로 글자체는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글자체파일은 보호되는 기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는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디자인파일을 보호하는 것과 같으며, 더 나아가 그림을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그림파일을 보호한다고 설명될 수 있는데, 결국 보호대상의 본질을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대상의 전자적 형식만을 보호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디지털타이포그래피(digital typography) 시대의 글자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글자체도안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게 되면서 글자체파일의 이용허락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제한 조항이 국민들의 문자생활에 방어막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1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울러, 글자체와 글자체파일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글자체 보호의 본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자체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제한규정을 갖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판결.
 [2] 본고에서는 ‘글자체파일’, ‘컴퓨터프로그램’을 공백 없이 그대로 쓴다. 글자체파일은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용어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한 법률용어이기 때문이다.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판결, 대

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판결.
 [4] 글자체 보호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이상정, “우리나라에서의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제101호), 2013. ISSN: 1226-0967; 류시원,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 재고를 위한 현실적 토대”, 계간저작권(제125호), 2019. ISSN: 1226-0967; 차상욱, “글자체 디자인(서체도안)의 저작권법상 보호”, 계간저작권(제127호), 2019. ISSN: 1226-0967 등이 있음.
 [5] 정진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2013. DOI: http://www.kafil.or.kr/board/view?board_name=journal&article_no=210&page=7; 설문의 원출처는 정진근(연구책임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연구』(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482-01), 문화체육관광부, 2013. 2., 69~100쪽임.
 [6] 본 장은 정진근, “글자체의 보호 및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저작권정책연구(2019-05),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92-106쪽에서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ISBN: 978-89-6120-427-9
 [7]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8] 백경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법의 지배 - 최근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필요적’ 사법적극주의적 검토”, 계간저작권(제126호), 2019, 133쪽. ISSN: 1226-0967
 [9] Lucas S. Osborn, Intellectual Property channeling for Digital Works, 39 Cardozo L. Rev. 1303 (April, 2018); Lucas S. Osborn, The Limits of Creativity in Copyright: Digital Manufacturing Files and Lockout Codes, 4 Tex. A&M J. Prop. L. 25 (2017). 이상 문헌은 DOI: <http://www.westlaw.com>
 [1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74998판결; 본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95785(본소), 2012나95792(반소) 판결임.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대법원 2014. 10. 22. 자 2012마1724결정이 있으며, 그 원심결정은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자 2012라224결정이 있음.
 [11]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

95785(본소), 2012나95792(반소) 판결 9쪽부터 15쪽에서 설명하고 있음.

- [12] 대법원 2001. 6. 29, 선고99다23246판결[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01. 6. 26, 선고99다50552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5. 15, 선고98도732판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저작권법 위반)].
- [13] 글자체파일은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주장은 2001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글자체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글자체파일은 일련의 지시,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글자체보호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그것이다.(이영록, 「글자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 및 입법론적 고찰」, 저작권 연구자료[2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30쪽. DOI: <https://www.copyright.or.kr/mobile/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10927&pageIndex=7&portalcode04=&portalcode=04&brdclasscode=01¬iceYn=&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06&etc1=&searchTarget=ALL&brdctstatecode=&searchkeyword=>).

저 자 소 개



정진근(Jin Keun JEONG)

- 1995.2 KAIST 전산학과 졸업
- 1999.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 2004.2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
- 2004.4-2005.9 국립환경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
- 2005.9-2006.2 일본 지적재산연구소 초빙연구원
- 2006.3-현재 국립강원대학교 교수(현 법학전문대학원)
- 2015.7-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주관심분야> SW IP, ICT 관련 법제도